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연대납세의무자 체납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1,114억 2천만 원을 들여 [표 1]과 같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종합부동산시스템 등 5개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1] 지방세정보시스템 용도

시스템명	용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 세무공무원이 이용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시스템 (서울특별시별도의 세무종합시스템 구축)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대국민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정보 연계를 위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유관기관간 지방세 과세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통합시스템
종합부동산시스템	재산세 부과정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산출하는 시스템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국세청, 대법원,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그림]과 같이 과세자료관리, 체납정보관리, 통계관리, 세외수입관리, 공통관리 등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림] 지방세정보시스템 업무 구성도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한편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 3천여 명이 [표 2]와 같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세 11,385만 건을 부과하고 계 57조 원을 징수¹⁰³⁾하였다.

[표 2]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단위: 명, 만 건, 조 원)

이용자현황(2017년)		2017년			2016년		
기관수	이용자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	23,257	11,385	59.6	56.7	11,073	60.8	57.5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103) 비과세·감면 자료와 서울특별시 부과·징수 건수는 제외

또한 같은 기간 국민 697만 명이 [표 3]과 같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 10,700만 건, 합계 79.1조 원을 전자신고·납부하였다.

[표 3] 지방세 전자신고·납부현황(위택스)

(단위: 만 명, 만 건, 조 원)

이용자 현황(2017년)		2017년				2016년			
기관수	회원수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고		전자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	697	1,627	22.5	9,073	56.6	1,498	19.7	8,827	52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2. 연대납세의무자 체납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제7항에 따르면 [표 4]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경우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동일한 조세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하여 전체의 납세의무(이하 “연대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연대납세의무자

조세채무	연대납세의무자
·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분할되는 법인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士)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신회사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과점주주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상속물건에 대한 징수금	· 상속인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제7항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대납세의무자를 체납자로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대납세의무자들이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위 연대납세의무자를 체납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체납자 지정 및 체납처분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진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체 체납 25건과 서울특별시의 체납건 중 13건¹⁰⁴⁾ 등 총 38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위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별표] “표본 조사 결과”와 같이 AJ 등 4명(AK, AL, AM)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7,455,000원¹⁰⁵⁾을 체납¹⁰⁶⁾하고 있는데도 대표 연대납세의무자 AJ만 체납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3명은 체납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AN 등 5명(AO, AP, AQ, AR)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지방세 6,415,36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도 대표 연대납세의무자 AN만 체납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연

104) 서울특별시 △과 10건(연대납세의무자 중 체납액 상위 1-10위), 서울특별시 ●과와 강남구 ◎과 ㉠로부터 3건(임의제출) 등 합계 13건

105) 과세물건: 외 1필지(면적: 823m²), 과세표준: 68,800,000원

106) 2017. 12. 12. 당진시는 AJ 외 3명에게 취득세 6,937,000원을 부과

대납세의무자들 4명(AO, AP, AQ, AR)은 체납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은 2018. 6. 14.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대표 연대납세의무자만 체납자로 지정되고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은 체납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당진시는 대표 연대납세의무자 AN에 대하여는 무재산으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AO 등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4명에 대해서는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위 38건 중 15건의 경우 대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없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재산압류 등이 필요한데도 대표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을 알 수 없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지방세를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3. 체납자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¹⁰⁷⁾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포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된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② 내국인이 외국으로

107)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의 징수유예액, 같은 법 제105조의 체납처분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 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행정안전부, 2017. 5. 23)에 따라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 결과 「지방세징수법」 제2조 및 제106조에 따른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고,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대납세의무자들이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별표] “표본 조사 결과” 중 당진시 AJ(8번)의 사례와 같이 체납자인 AJ 등 4명의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대표 연대납세의무자인 AJ만 체납자로 관리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할 뿐 나머지 AK 등 3명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¹⁰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108) 방문(타 관할 포함), 민원24, 위택스를 통해 신청접수 및 발급

또한, 위와 같은 문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 및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과세사실이 누락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대출용·보증용·공직선거후보자 등록용·학비 감면 신청용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IV.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발급요령’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사실이 있으면 과세내역을 표기하여 발급하고 과세사실이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세무공무원이 대표 연대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위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과세사실이 표기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항”의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대표 연대납세의무자 AJ만 과세사실이 표기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고 AK 등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3

명은 “과세사실 없음”이 표기된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발급¹⁰⁹⁾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5.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1~3항”의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모든 연대납세의무자를 ① 체납자로 지정하고 ②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차단하며 ③ 과세사실이 표기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세무부서)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정정보부), ●●●(유지보수업체) 등과 지방세정보화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① 전년도 지방세정보 추진 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 안내, ② 우수사례 발표 및 전문가 특강, ③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향 등을 위한 분임별 주요 과제토의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정보화 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즉시 보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상반기 지방세정보화 발전협의회¹¹⁰⁾(회의안전 번호: 10)를 통해 “연대납세자의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조회가 누락되어 납세증명서 발급”, “연대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 요청 시 해당 과세자료에 조회가 안되어 과세증명

109) 방문(타 관할 포함), 민원24, 위택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청접수 및 발급

110)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제주 ●●에서 개최, 구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6명 등 총 104명 참석(지방자치단체 74명, ●사업단 10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명, ●사업단 6명)

서 발급 불가” 등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4. 12. 2.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문¹¹¹⁾을 시행하여 [표 5]와 같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납세의무 등 관리기능 개선계획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표 5] 연대납세의무 등 관리기능 개선 계획

<현행> 연대납세의무자 및 2차 납세의무자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불가
↓
<개선> 연대납세의무자 및 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등록 후 과세내역 조회 및 위택스 납부, 체납자관리카드 관리·조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2018. 6. 14.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1~3항”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¹¹²⁾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연대납세의무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 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검토하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미흡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스템 수정을 위한 영향도 분석 등의 사전작업을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8년 9월까지 연대납세의무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부동산 압류 및 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관련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수정을

111) “연대납세의무 및 2차납세의무 관리기능 개선 안내”(●과-99)

112) 2018. 6. 25.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에 “2015년도 현안사항(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최초 신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종합부동산세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전국 자료 제공, 지방세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이 많아 연대납세의무자 기능수정의 최종관리가 미흡하였다”라고 답변

완료함과 동시에 2018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연대납세의무 자료정비 완료 및 조치사항(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문 및 최고장 발송, 전국재산조회 등)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여 전국적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조회된 전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2018년 11월까지 압류처분을 완료하여 조세채권 확보¹¹³⁾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 ①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사실을 표기하며,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② 필요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선 전이라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대납세의무 체납자 내역을 배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통보)
- ③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완하는 등 연대납세의무자 체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13) 행정안전부는 연대납세의무 체납건(2018. 8. 31. 기준 총 6,885건, 계 32,057백만 원) 중 1,223건, 계 20,124백만 원에 대해 2018. 7. 26.부터 같은 해 9. 10. 사이에 압류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546건, 계 1,055백만 원을 2018. 8. 1.부터 같은 해 9. 30. 사이에 징수하였다고 통보

[별표]

표본 조사 결과

(단위: 원)

연번	과세번호 (과세관청, 체납관리)	체납액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압류자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1	- (강남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316,664,86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2	- (강서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147,260,690	-	-	압류	미압류
3	- (성북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144,047,22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4	- (성북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88,754,100	-	-	압류	미압류
5	- (광진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73,667,020	-	-	압류	미압류
6	- (당진시, 당진시)	12,232,28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7	- (강남구, 강남구)	4,486,77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8	- (당진시, 당진시)	4,721,540	AJ	AK	압류	미압류
				AL		미압류
				AM		미압류
9	- (당진시, 당진시)	2,733,460	AJ	AK	압류	미압류
				AL		미압류
				AM		미압류
				AK		미압류
				AL		미압류
				AM		미압류

연번	과세번호 (과세관청, 체납관리)	체납액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압류자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10	- (강남구, 강남구)	2,240,70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11	- (당진시, 당진시)	1,963,49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12	- (당진시, 당진시)	1,264,56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13	- (당진시, 당진시)	670,62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14	- (당진시, 당진시)	458,31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15	- (당진시, 당진시)	384,86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연번	과세번호 (과세관청, 체납관리)	체납액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압류자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16	- (당진시, 당진시)	284,50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17	- (강남구, 강남구)	255,290	-	-	압류	미압류
18	- (당진시, 당진시)	92,68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19	- (당진시, 당진시)	41,860	-	-	압류	미압류
20	- (당진시, 당진시)	21,680	-	-	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21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본청 △과)	15,742,645,340	-	-	압류	압류
22	- (성북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88,797,020	-	-	압류	압류
				-		압류
				-		압류
				-		압류
23	- (도봉구, 도봉구)	110,568,180	-	-	압류	미압류
				-		압류
				-		압류
				-		미압류

연번	과세번호 (과세관청, 체납관리)	체납액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압류자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24	- (강동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574,045,84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25	- (서초구, 서울특별시본청 △과)	77,885,13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26	- (당진시, 당진시)	3,379,000	AN	AO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AP		미압류
				AQ		미압류
				AR		미압류
27	- (당진시, 당진시)	2,792,800	AN	AO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AP		미압류
				AQ		미압류
				AR		미압류
28	- (당진시, 당진시)	2,555,00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29	- (당진시, 당진시)	2,288,19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30	- (당진시, 당진시)	2,007,66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31	- (당진시, 당진시)	1,366,97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연번	과세번호 (과세관청, 체납관리)	체납액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압류자	
					대표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
32	- (당진시, 당진시)	264,84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33	- (당진시, 당진시)	261,87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34	- (당진시, 당진시)	243,560	AN	AO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AP		미압류
				AQ		미압류
				AR		미압류
35	- (당진시, 당진시)	184,26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		미압류
36	- (당진시, 당진시)	82,41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		미압류
37	- (당진시, 당진시)	29,10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38	- (당진시, 당진시)	23,190	-	-	무재산으로 미압류	미압류

주: 작성기준일 (연번 1~5, 21, 22, 24, 25) 2018. 6. 20., (연번 7, 10, 17) 2018. 5. 17., (연번 6, 8~9, 11~16, 18~20, 23, 26~38) 2018. 5. 16.

자료: 당진시 및 서울특별시 자료 재구성